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30 선고 2014가단5048517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4. 9. 16.

판결 선고2014. 9. 30.

주 문

1. 피고 A,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,134,369원 및 그 중 44,706,609원에 대하여 2013. 10. 22.부터 2014. 8. 19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2. 12. 1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피고 A에게 2012. 11. 26.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62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1. 7. 1. 피고 A의 국민은행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50,000,000원, 보증기한 2016. 7. 1., 대위변제시 지연손해금율 연 15%(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서 정한 연 25%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)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.

나.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서로 대출받은 50,000,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2. 10. 3.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을 통고 받은 원고는 2013. 10. 22. 위 은행에 44,982,809원을 대위변제하고, 그 직후 276,2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44,706,609원이 되었다.

라. 한편,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712,320원을 지출하였는데, 그 중 284,560원을 회수하여 남은 비용은 427,760원이 되었다.

마. 피고 C는 2012. 11. 15.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'이라 한다)하고, 이를 원인으로 2012. 11. 26. 전주김제등기소 접수 제26291호로 근저당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바.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공시가격 약 14,00여만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은 없이 위 국민은행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,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 A의 처제이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김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(피고 A, B)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,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45,134,369원(= 대위변제금 44,706,609원 + 보전비용 427,76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,706,60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. 12. 2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. 8. 19.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(피고 C)

가. 피보전채권

- (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된다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).
- (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약 1개월 이전인 2012. 10. 3. 피고 A이 국민은행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 받았는바,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미 발생되어 있던 법률관계(신용보증약정)를 기초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, 이후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

살피건대,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

있는바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 판결,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,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 C의 선의 주장 판단

피고는 2012. 11. 15.부터 2012. 12. 11.경까지 합계 20,000,000원 상당을 피고 A에게 대여하였고,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그 담보로 설정 받은 것일 뿐 그로 인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전혀 알 수 없었고, 피고 A의 부채나 사업 과정 등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의 체결 시점, 피고 A과의 관계,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피담보 채권 금액 일부가 채무자에게 송금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, 금전차용증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을 1호증(통장거래내역)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전국진

별지